

		<h1>보도 설명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21. 10. 8.(금) 총 4매(본문2, 참고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국제항공과	• 과장 김홍락, 사무관 황성필, 주무관 황병철 • ☎ (044) 201-4211, 4209	
	외교부	동남아1과	• 과장 황유실, 사무관 장하라 • ☎ (02) 2100-7369	
	문화체육 관광부	국제관광과	• 과장 이정은, 서기관 전수련 • ☎ (044) 203-2832	
	중앙사고 수습본부	해외입국 관리팀	• 팀장 주 철, 사무관 조민정 • ☎ (044) 202-1807	
보도일시		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8.(금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(관광·상용) 가능 한-싱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10.8일(금) 15시에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* 간 영상회의를 통해 「한-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(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, 싱측: Vaccinated Travel Lane)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.
 - * (한)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- (싱가포르) 교통부 이스와란(Mr. S Iswaran) 장관
- 한-싱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,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·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,
 -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(월)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(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)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(개인 및 단체여행,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)이 가능하게 되었다.

< 우리 국민의 싱가포르 입국조건 변경요지 >

	현행	변경('21.11.15~)
격리	7일 자가격리 의무	백신접종완료 및 입국직후 PCR 검사 음성  격리면제
기타	PCR 진단검사 3회 (①항공기 탑승 48시간 전, ②입국직후, ③7일차)	PCR 진단검사 절차 별도 공지 예정

□ 한편, 외교부는 「한-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」*에 별도 합의(11.15일 동시시행 예정)하였으며, 이는 한-싱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예정이다.

*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

○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(WHO) 긴급 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,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하여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.

□ 한-싱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▲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**코로나-19 예방접종증명서**, ▲일정시간* 이내 **코로나-19 검사 음성 확인서**, ▲입국 후 확진시 **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 증서**, ▲비자**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여야 하며,

* (한→싱 입국)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내 / (싱→한 입국) 항공편 탑승전 72시간 내

** 향후 한-싱 사증면제협정(20.4월부 잠정 중단) 재개 예정

○ ▲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, ▲현지 도착 직후 **코로나-19** 검사를 받아 **음성확인**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.

※ 필요 서류 및 세부적인 격리완화 절차 등 ☞ **【참고자료】**

□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“이번 한-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,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”고 평가하며,

○ “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**방한관광**을 활성화 하여 국내 **항공·여행업계**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 덧붙였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부 황성필 사무관(☎044-201-4211), 외교부 장하라 사무관(☎02-2100-7369), 문체부 전수련 서기관(☎044-203-28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백신접종 완료의 기준** *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

-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완전히 접종(백신의 완전한 보호효과를 위해 필요횟수만큼 접종, 교차접종 가능)하여, 최종접종 이후 **2주 경과**
- 백신접종 증명서는 한국 또는 싱가포르 관계당국에 의하여 영문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, 전자적 형태로 제시되어야 함*

* 물리적 형태(종이)의 증명서는 ▲전자적 형태의 증명서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며, ▲반드시 「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」 사이트를 통해 발급 필요

□ **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여행하는 사람** * 싱가포르 VTL 입국절차

- (대상) 한국(또는 싱가포르)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, 한국(인천공항) → 싱가포르(창이공항) 간 지정 직항편*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적자

* 시행초기 VTL用 항공편 별도지정 예정(한시) ⇨ 추후 별도공지(항공사 홈페이지)
- 현재 한↔싱 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, 아시아나, 싱가포르항공이 운항 중이며 향후 추가 항공사 진입 및 지방공항 추가개설 등 가능

- (신청)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*에서 VTP(Vaccinated Travel Pass)를 사전 신청(입국전 7~30일 사이)하고, 유효한 예방접종증명서 업로드

* <https://safetravel.ica.gov.sg> (11.8일부터 VTP 신청 가능 예정)

- (출국 전) 여행 전 **14일** 간 한국(또는 싱가포르 또는 싱가포르에서 지정한 VTL국가)에 체류해야 하며 입국직후(창이공항) 검사비용 사전결제* 및 싱 입국을 위한 **SG Arrival Card 발급**** (건강·숙소정보 등 입력, 입국전 3일내 신청)

* <https://safetravel.changiairport.com> / ** <https://eservices.ica.gov.sg/sgarrivalcard>

- 싱가포르행 항공기 탑승시각 전 **48시간** 이내 PCR 검사, 유효한 비자(필요시) 및 30,000 싱가포르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및 **TraceTogether** 어플리케이션(동선 관리기능) 다운로드 및 설치*

* <https://tracetgether.gov.sg/>

- (도착 후) 입국심사시 VTP, 백신접종증명서, 항공기 탑승시각 전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, 유효한 비자(필요시), 보험가입 증명서, TraceTogether 설치여부 등 제시 필요
- 입국직후 창이공항에서 PCR 검사 후 개인 교통수단 또는 택시를 탑승하여 지정숙소(VTP 신청시 지정)로 이동, 음성확인(24시간 소요)시까지 단독(또는 백신접종 및 한국체류이력이 동일한 가족끼리)으로 격리
- (체류 중) 싱측 방역수칙(PCR 검사 등) 이행, TraceTogether 앱 활성화
 - ※ 싱가포르측의 PCR 검사절차 등을 포함한 최신 격리완화 지침은 싱가포르 공식 누리집(<https://safetravel.ica.gov.sg>)에서 확인 가능(수시로 확인 필요)
- (귀국시) 국내 접종완료자는 귀국편 탑승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, 입국 1일차 및 6일차(또는 7일차)에 PCR 검사*
 - * 국내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격리 면제 지침이 적용

□ **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사람** * 해외접종자 격리면제 기준

- (대상) 싱가포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, 싱가포르(창이공항)→한국(인천공항) 지정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적자(비자유건 별도)
- (출국 전) 여행 전 14일 간 싱가포르(또는 한국) 체류, 한국행 탑승전 출발일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, 여행자 보험(3천만원 이상) 가입
- (도착 후) 백신접종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, 특별검역신고서·건강상태질문서(기내작성), 유효한 비자(필요시) 등 제시, 자가진단앱 설치
 - 인천공항 코로나-19 검사센터(사전예약, <https://safe2gopass.com>)에서 검체 채취(본인부담) 후 숙소로 이동 및 음성확인시까지 대기, 음성시 격리해제
- (체류 중) 입국 6~7일차에 추가검사(질병청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, 추후 공지), 한국 내 방역지침 준수,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등
 - ※ △“국내 접종완료자” 및 △“싱내 접종자로 대사관 발행 격리면제서 소지자”는 기존 검역지침에 따라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①입국직후 및 ②6-7일차 검사